

연구윤리 규정

2014. 6. 11 제정

2018. 10. 1 일부개정

2019. 6. 14 일부개정

2020. 9. 7. 일부개정

<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윤리센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교원윤리 강령」과 「교원윤리 규정」에 표명된 교원연구윤리에 관한 이념과 원칙을 토대로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윤리 기준을 정하고 연구윤리 위반을 예방하며 연구윤리 위반시 공정한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 교원(비전임교원 포함)에 적용된다.

②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준용) 본교 소속의 학부 및 대학원생, 그 밖에 본교에서 연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의 기준

제1절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제4조(연구의 진실성)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①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적절한 실험설계와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결과 활용 시 주의사항)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부의 평판 제고나 연구비 확보 등을 위해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제8조(관련 법규 준수 의무) 연구자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2절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제9조(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저자의 책임과 의무)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② 저자들은 본교 또는 외부 기관이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교신저자) ①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12조(저자결정 기준) ①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의 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의 착상 및 설계
2. 데이터 수집 및 해석
3. 초고 작성
4. 최종 원고의 승인 등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13조(저자표시 순서결정)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15조(데이터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데이터, 표본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과 그와 관련된 책임 문제를 연구 착수 단계부터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6조(직무와 관련된 연구결과의 소유권) 교수 또는 연구원이 본교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

한 연구의 결과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소유이므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변경과 소유권 문제) 연구책임자가 소속기관을 옮길 때 명확한 합의나 규정이 없을 경우 데이터의 소유 또는 공유 문제는 연구책임자와 본교 또는 연구기관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한다.

제18조(데이터 공유 및 공개) 연구책임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표한 연구논문의 데이터 및 표본을 자신의 책임 하에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교수의 기본 책무) ①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자는 지도교수로서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등 연구 참여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공정하게 연구원의 공적을 인정하고 저자 자격을 결정해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학생을 연구 조교로 고용하는 경우 교육자로서 학생이 창조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④ 지도교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권, 권익보호,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20조(연구 환경 조성 · 유지의무) ① 지도교수는 책임 있는 연구수행행위가 존중되는 연구 환경을 유지해야 하고, 연구원들이 연구수행에 책임감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연구원의 인종, 성, 나이, 민족, 성적 취향 등에 따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연구원이 차별 없이 지도 및 감독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부당한 저자자격을 요구하지 말아야 하고, 연구원과 맺은 협약을 존중해야 한다.

④ 지도교수는 연구원의 채용 및 대우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연구비 및 실험재료 등과 같은 연구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⑤ 여성이나 소수자집단의 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성차별이 없어야 한다.

제21조(연구지도와 심사) 지도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연구원의 연구와 논문 작성을 성실히 지도하고, 자신이 지도하는 연구가 잘 수행되었고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신중히 심사를 해야 한다.

제22조(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도) 지도교수는 박사후연구원이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다른 연구원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연구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제23조(연구책임자의 책임범위)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관련된 재정지출, 직원교육, 데이터 수집 · 보고, 연구결과 보고 등 연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진실성과 관련해 책임을 진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의 권리와 인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당하게 대우해야 하며, 연구기여도에 따라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시에 연구결과가 악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4조(안전관리의무) ① 연구책임자는 안전 업무를 총괄하며,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안

전 점검·진단·훈련, 안전 보호 장치·시설의 관리와 운용, 연구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응급 상황을 대비한 구급품 및 비상 연락망의 구비 등에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폭발, 감전, 유해 화학물질·실험폐기물·방사능·미생물 누출 등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수주 여부를 결정할 때 연구수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 및 시설의 존재 유무와 그 설치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3절 연구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25조(인용방법 및 원칙)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③ 저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⑤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⑥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⑦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⑧ 선행연구 리뷰에서 초록을 사용했으면서도 참고문헌 목록에는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거나, 논문의 출간 버전을 인용하면서 실제로는 학술회의 발표논문집에 출간된 초기 버전 또는 예비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26조(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①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7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여기에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

를 말함)

3. 표절: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중복게재: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행위

제28조(아이디어 표절) ①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다.

③ 저자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29조(텍스트 표절) ‘텍스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0조(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31조(중복게재) 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②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 또는 발행인과 중복게재 예정 학술지의 편집인 또는 발행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 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32조(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②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33조(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 ①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

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연구제안서나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반납하거나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제34조(비윤리적 연구행위) 다음의 각 호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1. 유일한 발명가로 승인받기 위하여 공동발명자에게 의도적으로 특허 출원을 알리지 않는 행위
2. 공동연구의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지 않고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행위
3. 연구결과를 검증받기 위한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4. 연구계획이 해당분야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 연구비를 지원받으려고 기대효과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5.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6.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연구결과를 과대평가하는 행위
7.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8. 인간피험자 보호 및 실험동물 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9. 연구비 유용행위
10. 연구업적 및 결과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제35조(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1. 부적절한 출처인용
2. 참고문헌 왜곡
3.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4.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인용
5.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6.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7.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36조(참고문헌의 왜곡금지)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37조(텍스트의 재활용) ①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기타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1. 저자의 데이터 또는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중요한 관련 증거를 보고하지 않거나 독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2. 방법론상 또는 통계상의 결함이나 기타 다른 유형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입증의 근거로 인용하는 행위
3.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재현할 수 없도록 표본설계를 포함한 연구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술하는 행위

제4절 이해상충

제39조(금전적 이해상충) ①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연구자는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상당한 금전적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연구 착수 전에 본교와 다른 연구 참여자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리, 축소 및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자신의 금전적 이익과 연구팀, 연구기관 또는 본교의 금전적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말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40조(교원창업 및 연구수주 시 규정준수의무) ① 본교에 전임으로 소속된 연구자는 금전적 이익과 관련된 창업이나 외부 활동 시에는 이 사실을 본교에 알려야 한다.

② 연구자는 금전적 이익과 관련된 창업이나 외부 활동에 본교의 설비, 인력, 장비 등 본교 자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에 불가피하게 본교의 시설이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교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③ 벤처사업과 관련된 연구자는 학생을 직원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하며, 교수로서 학생을 독립적 연구자로 발전시킬 책무가 있다.

제41조(교원의 기본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와 강의를 동시에 담당할 때 한 직무의 수행이 다른 직무의 수행과 충돌하지 않도록 시간과 노력을 조정해야 한다.

② 교수로서의 의무이행과 외부활동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교수의 시간과 지적 에너지는 교육, 연구, 학술활동, 학생지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과도한 외부활동 금지) 교수로서의 기본의무인 교육 및 학생지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외부활동이나 연구수주를 피하여야 한다.

제43조(사적 상충) ① 연구를 제안, 수행, 보고 및 심사하는데 있어 사적 편견을 피해야 하며, 소속기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연구자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의 연구 참여에 따라 사적 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 착수 전 또는 연구 수행 중 본교 및 공동 연구자에게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을 통해 보고하고 이를 관리, 축소 및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공저 연구의 발표나 투고 전에 본교 및 해당 학술단체에 특수관계인에 관한 사항을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서[별지 제7호 서식]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사전 보고는 본교에서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44조(심사시 주의사항) ① 연구비 지원 과제 심사, 논문 심사, 인사 심사 등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기한과 기밀을 지켜야 한다.

② 피심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심사자의 기피사유) 가까운 동료나 제출한 연구비신청서나 논문 등의 심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 상충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의뢰받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46조(지적 상충) 특정한 연구 분야나 연구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적 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동연구의 제안, 심사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과 도덕적 신념을 밝혀야 한다.

제47조(관리의무) ①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자는 이를 보고하고 이해관계가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제거할 의무가 있다.

②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발생할 수 있는 상충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연구자의 연구를 모니터하고, 연구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점검해야 한다.

④ 이해 상충이 있는 연구자는 연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데이터의 해석과 같은 연구의 중요한 과정이나 특정한 심사결정의 참여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제5절 인간 피험자 보호

제48조(사전허가취득 의무) 인간 피험자 및 조직을 이용한 연구(이하 ‘임상시험’이라 한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 및 복지보호를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9조(기본원칙) ① 임상시험은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피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연구가 피험자의 신체적·정신적 존엄성 및 그들의 인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필요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과 상해없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피험자는 실험을 중단할 자유가 있다.

④ 연구자는 피험자가 연구자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강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피험자의 편익을 최대화시키고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⑥ 연구자는 정신지체자나 특정 민족, 성별 등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편견 없이 편익과 위험을 공정하게 분배할 의무가 있다.

⑦ 임산부, 인간 태아 및 신생아, 아동 및 수감자 등을 피험자로 사용하는 생명의학 및 행동

과학 연구에서는 부가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고지 동의 의무)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피험자에게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1조(고지 동의 내용 및 문서화) ① 연구책임자는 피험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유의사에 의한 임상시험 참가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험자의 이해능력, 의사표현 능력의 결여로 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피험자의 친권자, 배우자 등 적법하게 피험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의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 임상시험이 연구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
 2. 예상 참여기간과 예상 피험자 수
 3. 임상시험의 목적, 내용 및 방법
 4. 피험자가 받게 될 검사 또는 시술
 5. 예측 효능, 효과, 부작용 및 위험성
 6. 임상시험의 안전대책
 7. 환자를 피험자로 할 경우에 해당 질환에 대한 여타 치료 지원 방법 및 그 내용
 8. 피험자가 시험참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9. 피험자가 시험참가에 동의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유의사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
 10. 신분의 비밀보장
 11. 기타 피험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피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② 피험자 동의서는 책임자 및 피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서 사본과 기타 피험자에게 준 문서정보의 사본을 피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2조(피험자 자유의사의 확인) 연구자는 피험자의 고지 동의가 연구자와의 종속관계나 강압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해당 연구와 무관하거나 완전히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동료연구자를 통해 고지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3조(비교대조연구의 피험자에 대한 조치) 비교대조연구에 참가하는 피험자에게도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그 연구의 성격과 기대효과, 위험성, 자신이 위약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4조(개인신상정보 보호) 피험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제55조(데이터의 비밀유지) 연구자는 피험자에 관한 데이터의 비밀유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56조(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의무) 비밀보장에 대한 연구자의 법적 또는 기타의 한계와 비밀유지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피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6절 실험동물 복지

제57조(사전허가취득 의무) 살아있는 척추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을 이용한 연구(이하 ‘동물실험’이라 한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험동물의 권리와 안전 및 복지보호를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교 주관 위원회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8조(일반사항) ①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운송, 보호 및 사용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연구의 설계와 수행은 인간 또는 동물 보건과의 관련성, 지식의 진보 또는 사회의 공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타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적합한 양질의 동물을 최소한도로 이용하고, 동물을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동물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사전 윤리 검토가 필요하다.

⑤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연구는 사용될 동물의 변형, 대체 등의 가능성을 미리 고려한 후 실험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59조(실험동물복지의 원칙)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체원칙: 비동물 모형을 사용하거나 가급적 하등동물을 사용함
2. 축소원칙: 실험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함
3. 개량원칙: 불필요한 통증과 고통을 제거하거나 축소함

제60조(통증과 고통의 최소화) 실험동물의 고통과 괴로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정제 및 진통제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하며, 완화될 수 없는 고통이나 만성적이며 심각한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을 고통 없이 도살하여야 한다.

제61조(실험동물의 권리보호)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을 적절하게 사육·관리하고, 유해 물질을 실험동물에 사용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험과정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62조(안전관리) ① 연구과정에서 실험동물을 보호하고 다루는 책임자의 자격 및 기술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실험동물 관리자는 실험동물이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실험과정에서 실험동물에 의해 실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며, 실험동물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실험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훈련을 거친 후 실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실험이 끝난 뒤 실험동물의 사체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3장 관련 위원회

제1절 연구진실성위원회

제63조(설치) 연구 부정 및 부적절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며, 그 행위의 발생시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본교에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64조(위원회의 업무)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연구 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등 연구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2. 연구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 조치
5. 조사 결과의 처리 및 관련 후속 조치
6. 연구윤리 교육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7. 그밖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65조(위원 및 지위) ①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연구처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처장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직무범위에 속하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제66조(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기간) ①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조사
2. 본조사
3. 판정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며, 판정 결과는 예비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⑤ 예비조사 착수 이후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조사 결과나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67조(제보자, 피조사자 보호) ① 제보자는 서면, 구술,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실명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피조사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부정행위 조사과정 중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관련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서는 피조사자에게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알려주어야 하며,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8조(조사결과 후속 조치) ① 피조사자가 최종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위원회가 판정하면,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관련 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위원장은 최종 결과를 서면으로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③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기록보관)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기록은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70조(문서 등의 공개) 관련 보고서 및 조사위원의 명단은 필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 참여자 등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1조(시행세칙)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72조(설치)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본교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3조(IRB의 설치 및 기능) ① 본교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IRB 운영의 필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인간대상연구 IRB
2. 인체유래물연구 IRB
3. 배아연구 IRB
4.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 IRB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IRB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나.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다.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라.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마. 그밖에 본교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본교에서 수행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3. 그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 가. 본교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 나.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 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제74조(구성) ① IRB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인 위원과 1명 이상의 전문간사인 위원을 포함하여 총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양한 연구 분야의 계획서를 심의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전문분야와 문화적 다양성 등을 고려하고,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② IRB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IRB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5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① IRB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총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 2. IRB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 3. 그 밖에 IRB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IRB는 정기적(월 1회 등)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본교에 재직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반드시 1인 이상 출석해야 한다.
- ④ 회의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⑤ IRB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IRB는 위원 명단과 위원들의 자격을 적은 문서 및 IRB의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제76조(시행세칙 또는 지침) IRB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IRB의 의결을 거쳐 IRB 표준운영 시행세칙 또는 IRB 표준운영지침으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절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77조 (설치)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동물실험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검토 및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함을 목적으로 본교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제7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동물실험의 윤리적 및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 2. 실험동물의 생산 · 도입 · 관리 · 실험 · 이용과 사후처리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4.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실태의 확인 및 평가
- 5. 기타 동물실험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79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명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단, 해당 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2.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고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 (간사,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 이상을 두며, 회의 안건 검토, 회의 운영 및 결과 통보 등 행정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1인 이상 선정하여, 간사와 함께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실험동물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82조 (회의) ①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외부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접 관여할 경우에는 관련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3조 (권한 및 책임)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제2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및 관리현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조사를 시행하거나 담당부서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매년 시설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시설이 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4조 (심사 및 평가) ① 본교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서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승인된 실험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동물실험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재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실험계획 심의·평가에서 다음 각 호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8.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9.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은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평가하고, 평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의결한다.

⑤ 심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심사와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5조 (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 (승인 후 조치) ① 동물실험 진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책임연구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에 따라 동물실험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물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나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동물실험이 종료하면 연구자는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계획에 따라 실험이 시행되었는지 최종 점검한다.
- ④ 동물실험에 관련된 문서는 해당 실험이 종료된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7조 (예산) 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교비회계에서 지원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8조 (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연구처에서 관장한다.

제89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교원연구윤리 지침」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43조 개정,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 신설)